



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.

주체	제한 내용
후보자,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	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(돈·선물·음식물 등 제공 불가)
누구든지	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
	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 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
	위 행위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 알선·요구하는 행위 금지

※ '후보자'에는 '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' 합니다.



위반행위를 신고하면
포상금 **최대 2천만 원** 지급!

※ 구·시·군체육회장선거는 최대 1천만 원

신고자의 **신분**은 법에 따라
철저하게 **보호**됩니다.



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
과태료 **최고 3천만 원** 부과

※ 제공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
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

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
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

**법규안내 및
위법행위 신고·제보**

국번없이 1390
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
위반행위 신고란
- 각 지역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
방문 또는 전화



2022. 12. 15. 실시 시·도 체육회장선거

2022. 12. 22. 실시 구·시·군 체육회장선거

선거운동 및 금지사항 안내

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NATIONAL ELECTION COMMISSION



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



선거일

- ✓ 시·도체육회장선거 : 2022. 12. 15.(목)
- ✓ 구·시·군체육회장선거 : 2022. 12. 22.(목)

선거운동기간

- ✓ 시·도체육회장선거
→ 2022. 12. 6(화) ~ 12. 14.(수) [9일간]
- ✓ 구·시·군체육회장선거
→ 2022. 12. 13.(화) ~ 12. 21.(수) [9일간]
- ✓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선거운동 주체

선거운동은 오로지 '후보자' 만 '선거운동기간 중' 에 할 수 있습니다.

※ 선거사무원은 둘 수 없음

선거운동 방법

후보자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- 전화 이용(직접 통화하는 방법만 가능)
- 문자메시지 전송
- 정보통신망 이용
→ 체육회가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
→ 전자우편(SNS 포함) 전송
- 윗옷 및 어깨띠 착용
-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(9cm×5cm 이내)
- 선거일 소견발표
- 정책토론회
→ 체육회마다 개최 여부는 다를 수 있음
※ 선거사무소 설치 불가

임·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

체육회 임·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또한 특정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)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 됩니다.

주요 금지 사례



-  후보자나 그 가족이 투표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
→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,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(이하 후보자등이라 함)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
→ (당선목적)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→ (낙선목적)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
-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등을 비방하는 행위
→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 체육회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,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
→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
→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
-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의 집 등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
→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
- 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(선거일 소견발표는 제외)을 하는 행위
→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



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탁선거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, 소속 단체의 징계 등에 따라 선수·지도자·심판·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·직원으로서의 채용·활동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